

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2년 1월 12일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의회 훈령 제596호

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임실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임실군의회 소속 일반직 5급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

제2장 인사위원회

제3조(설치)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임실군의회에 인사위원회를 둔다.

제4조(구성)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9조의2를 따른다.

제5조(기능)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
2.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의결
3.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인사 관장사항

제6조(사무직원) 인사위원회의 서무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처리한다.

제7조(기밀유지)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중 의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제3장 승진

제8조(승진임용) ①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배수를 적용하여 승진 임용한다.

②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승진기회의 균등부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내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승진방법) ① 승진임용은 승진후보가 명부의 법정배수 대상인원 중에서 선발 임용할 수 있다.

② 승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상실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년도 기간 내에는 승진할 수 없다.

1. 직위해제, 징계처분을 받은 자
2. 근무성적 평정이 당해 기관내 “가”로 평정된 자
3. 교육기간중 근무태도 및 교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(퇴교, 낙제 등)

4.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든지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

제4장 전보 및 결원보충

제10조(동일직위간의 전보)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1조(공무원의 결원보충) 상위직 결원 시 보충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